

외국법제동향 특집 : COVID-19

일본의 감염병 관련 법제 대응

박수경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박사후연구원

I. 현황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湖北省武漢市)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일본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 지난 2020년 1월 15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2020년 3월 29일 12:00 기준, 일본 국내에서 감염 확진을 받은 자는 1,693명이며, 사망자 수는 52명이다.¹⁾ 현재 일본 국내는 우리나라만큼 검사 실시 횟수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PCR²⁾ 검사 실시 인원 수: 14,901), 확진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2020년 2월 3일에 일본 요코하마항(横浜港)에 도착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경우, 2020년 3월 28일 18시 기준, 총 3,711명 중 확진자 수는 712명으로 보고되고 있다.³⁾

이에 일본 정부는 2020년 1월 28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감염증법상의 "지정감염증", 검역법상의 "검역감염증"으로 지정하였다. 시행일이 2020년 2월 7일로 예정되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2020년 1월 30일에 정부 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본격 대응 중인 상황이다.

1 厚生労働省,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現在の状況について」, 2020.3.29, https://www.mhlw.go.jp/stf/newpage_10555.html.

2 "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PCR", '유전자증폭기술' 또는 '중합 효소 연쇄 반응법'이라고 부른다. 중합효소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증폭하는 방법으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은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reverse transcriptase PCR, 이하 Real-Time PCR)으로 감염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즉, 코로나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물질(핵산)을 분리하고, 이를 많은 수로 증폭시켜서 기계가 감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며, 검사 전 과정에 총 6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홈페이지 '이슈로 보는 R&D - 유전자 증폭 기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tis.go.kr/issuernd/main/issueDtl.do?searchTopicNo=202003180001>.

3 厚生労働省,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現在の状況について」, 2020.3.29, https://www.mhlw.go.jp/stf/newpage_10555.html.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각국 발생상황 보고에서 일본 국내 발생건수와는 별개(기타)의 건수로 취급되고 있다.

I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본부 및 정부 부처의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대책을 종합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일본 내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 이하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2020년 1월 30일에 각의결정하였다. 이 대책본부의 구성원은, 내각총리대신(일본 총리)을 본부장으로 하며, 내각관방장관과 후생노동대신(후생노동성 장관)이 부분장, 기타 모든 국무대신이 본부원으로 구성된다.⁴⁾ 이 대책본부는 정부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각 관계부처 수준에서의 대응상황도 살펴볼 수 있는데,⁵⁾ 관계부처의 구체적인 대응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일본 관계부처의 주요 구체적인 대응 내용

<p>(1) 착실한 검역 실시</p> <p>일본으로의 전체 입국자에 대하여 열화상계측장치 등을 이용하여 발열 등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건강카드 배포와 기내 안내를 실시하도록 항공회사에 요청하고 있다.</p>
<p>(2) 국내에서의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p> <p>중국 우한시에 방문 이력이 있고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자가 의료기관을 수진(受診)한 경우, 보건소에 보고하여 확실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체재를 정비하고 있다.</p> <p>또한 감염이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농후한 접촉자 조사를 하여 대상자에게 14일간의 건강관찰을 하고 있다.</p>
<p>(3)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p> <p>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포털사이트를 내각관방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외무성 등의 홈페이지에서 발생상황과 도항자에 대한 주의환기를 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관계단체에 주의환기 등의 안내를 하고 있다.</p>

출처: 内閣官房,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について」.

4 内閣官房,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の設置について」, 2020.1.30. 閣議決定,
https://www.cas.go.jp/jp/influenza/konkyo_corona.pdf.

5 2월 20일 기준, 일본 정부의 관계부처의 대응상황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内閣官房,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関連した感染症について関係省庁における対応状況一覧」, 2020.02.20,
http://www.cas.go.jp/jp/influenza/corona_taiou2.pdf.

II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대한 대응의 주요 내용

1. 대책의 경과⁶⁾

(1) 1월 21일 관계각료회의에서의 결정

1) 미즈기와(연안격리) 대책⁷⁾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오는 입국자 및 귀국자에 대하여 검역소에서 열화상계측장치(thermography) 등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비롯하여 미즈기와(연안격리) 대책을 철저히 한다.

2) 국내 감시

의료기관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적절하게 국립감염증연구소에서 검사하는 구조를 착실하게 운용함과 동시에, 감염자와 농후(밀접)하게 접촉한 자를 철저히 파악한다.

6 内閣官房,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を踏まえた対応について」,
https://www.cas.go.jp/influenza/corona_taiou1.pdf.

7 과거 조류독감(Influenza A virus subtype H5N1, 이하 H5N1)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사람으로의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던 가운데, 2009년 일본 정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행동계획을 책정하여 발생단계에서 국가의 대응을 명시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각종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서 “미즈기와 대책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
 “미즈기와 대책(水際対策: 미즈기와(水際)는 일본어로 ‘물가’를 뜻함)”이란, 해외에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입국 관문인 공항 또는 항만에서 검역 등을 통해 전염병의 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미즈기와 대책을 구축하는데 있어, 다음의 두 가지 과제의 양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자(이하 ‘감염자’)를 물가(미즈기와)에서의 침입 방지를 철저히 하여 국내에서의 만연 가능성을 막는 것
- 귀국을 희망하는 재외 국민의 원활한 귀국을 실현하는 것

따라서, 해외에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관계부처는 재외국민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신종 인플루엔자에 관계되는 검역을 실시하는 공항 및 항구의 집약화와 농후(밀접) 접촉자 등에 대한 정류조치(停留措置)를 시작한다. 또한, 감염자의 침입방지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국 및 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의 입국과 제3국을 경유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을 시야에 두면서, 발생국에서의 재외국민의 안전과 귀국수단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다(新型インフルエンザ及び鳥インフルエンザに関する関係省庁対策会議, 「新型インフルエンザ対策ガイドライン」, 2009.2.17. 중, “水際対策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부분 참조, <http://www.cas.go.jp/jp/seisaku/ful/guide/090217keikaku.pdf>).

3) 정보제공

국제적인 연계를 밀접하게 하고 발생국에서의 이환상황과 감염성 및 병원성 등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외국의 대응상황 등에 관한 정보수집에 최대한 노력한다.

국민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제공을 하여, 안심과 안전 확보에 노력한다. 또한 정보제공을 할 때에 감염자의 개인정보 취급에는 충분히 유의한다.

(2) 1월 23일 새로운 검역 등의 대책강화

1) 미즈기와(연안격리) 대책

중국에서 온 모든 항공편에서 건강카드 배포, 기내 안내 실시를 확대하도록 항공회사에 요청한다.

2) 의료체계

우한시 이외에 유행이 확대한 경우에는 그 유행지역에서 오는 방일객 및 귀국자가 입국 후에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 때에도 의료기관에서 행동력 등 상세한 청취를 하여, 보건소와 연계하여 유사증 감시(원인불명의 폐렴 환자 등을 파악하여 검사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확실하게 실시한다.

3) 국내 감시

국립감염증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에 대하여 전국 지방위생연구소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체제를 정비한다. 특히, 유의해야 하는 농후한 접촉자(예를 들어, 의료종사자)에 대해서 환자대응에 관계되는 주의환기 통지를 내린다.

4) 정보제공

숙박시설에 대하여 방일외국인 여행자에게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의 대응 주지를 도모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폐렴에 관한 Q&A를 정리하여 널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정감염증 등에 대한 지정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하여 감염증법에 근거로 하는 지정감염증 및 면역법에 근거로 하는 면역감염증으로 지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지정감염증으로 정하는 등의 정령(2020년 정령 제11호), 검역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2020년 정령 제12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지정감염증으로 정하는 등의 정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은 준용하는 경우의 대체에 관한 성령(2020년 후생노동성령 제9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2020년 후생노동성령 제10호)이 공포되었다.⁹⁾

〈표-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지정·검역감염증 지정

- **지정감염증** : 이미 알려져 있는 감염성 질병(일류감염증, 이류감염증, 삼류감염증 및 신종 독감 등 감염증 제외)로, 감염증법상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않으면, 해당 질병의 만연으로 인하여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 (감염증법 제6조)
- **검역감염증** : 국내에 상재(常在)하지 않는 감염증 가운데 그 병원체가 국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병원체의 유무에 관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 (검역법 제2조 제3호)

8 内閣官房,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指定感染症等への指定について」, https://www.cas.go.jp/jp/influenza/corona_taiou3.pdf.

9 厚生労働省,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を指定感染症として定める等の政令等の施行について(施行通知)」, 健発0128第5号, 2020.1.28, <https://www.mhlw.go.jp/content/10900000/000589747.pdf>.

	지금까지의 대책	지정감염증, 검역감염증에 지정한 경우, 실시가능하게 되는 조치
국내 대책	<p>(1) 진료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에 대하여 우한시에 체재력이 있고, 호흡기증상을 발병하여 의료기관을 수진한 환자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염두에 둔 진료를 하도록 의뢰</p> <p>환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자기부담으로, 협력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입원을 거부당할 가능성도 있음).</p> <p>(2) 보고 및 검사 의료기관에서 원인불명의 폐렴환자를 진찰한 경우, 보건소에 보고한 후 국립감염증연구소에서 검사를 하는 제도(유사증 감시)의 운용</p> <p>협력을 기본으로 하며, 의사의 의무는 아니다.</p> <p>(3) 농후(밀접)한 접촉자의 파악 국내에서 확인된 감염자 1명의 농후한 접촉자를 특정하여 건강상태 확인을 실시</p> <p>법률에 근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협력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p>	<p>(1)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 및 공비로 적절한 의료의 제공</p> <p>(2) 의사에 의한 신속한 신고에 의한 환자의 파악</p> <p>(3) 환자발생시 적극적인 역학조사(접촉자 조사)</p>
검역	<p>(1) 발열 확인 (2) 자기신고의 촉구</p> <p>협력을 기본으로 하며, 협력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p>	<p>질문, 진찰 및 검사, 소독 등이 가능하게 된다 (원격 및 정류는 할 수 없다).</p>

출처: 内閣官房,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指定感染症等への指定について」.

IV.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기본방침¹⁰⁾

지난 2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가 개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 기본방침에 근거로 하여 관련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기본방침은 그 동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현황 및 관련 대책들을 바탕으로, 감염확대방지책으로 유행의 조기종식을 목표로 하면서 환자가 증가하는 속도를 가능한 억제하고 유행규모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중증자 발생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 만전을 노력을 다하며, 사회 및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기본방침의 중요사항을 소개한다.

〈표-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기본방침

(1) 국민·기업·지역 등에 대한 정보제공

- ① 국민에게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제공과 호소를 하여 냉정한 대응을 촉구한다.
 - 발생 상황과 환자의 병태 등 임상정보 등의 정확한 정보제공
 - 손씻기, 기침 에티켓 등 철저한 일반감염 대책
 - 발열 등의 감기증상이 보이는 경우의 휴가취득, 외출 자제 등의 호소
 - 감염에 대한 불안에서 적절한 상담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은 오히려 감염 리스크를 높게 되는 것의 호소
- ② 환자·감염자와의 접촉기회를 줄이는 관점에서, 기업에 대하여 발열 등 감기증상이 보이는 직원 등에 대한 휴가취득의 권장, 재택근무(텔레워크)나 시차출근의 추진 등을 강력하게 호소한다.
- ③ 이벤트 등의 개최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전국 일률적인 자축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회의에서의 견해를 바탕으로 지역이나 기업에게 이벤트 등을 주최할 때에는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감염확산, 회의장 상황 등을 바탕으로 개최의 필요성을 재차 검토하도록 요청한다.
- ④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에 체재하는 일본 국민 등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지원을 한다.
- ⑤ 국민, 외국정부 및 외국인여행자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하고, 국내에서의 감염 확대 방지와 가짜 뉴스 대책으로 연계한다.

10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決定,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の基本方針」, 2020.2.25., <https://www.mhlw.go.jp/content/10900000/000599698.pdf>.

(2) 국내에서의 감염 상황 파악(발생 동향 조사)

1) 현행

- ① 감염증법에 근거로 한 의사의 신고로 유사증환자를 파악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PCR 검사를 실시한다. 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감염증법에 근거로 하여 적극적인 역학조사로 농후(밀접)접촉자를 파악한다.
- ② 지방위생연구소를 비롯한 관계기관(민간의 검사기관을 포함)에서의 검사기능 향상을 도모한다.
- ③ 학교관계자의 환자 등의 정보에 대하여 도도부현 보건위생부국과 교육위원회 등 부국 간에 적절하게 공유한다.

2) 향후

지역에서 환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입원을 필요로 하는 폐렴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확정 진료를 위한 PCR 검사로 이행하면서, 국내에서의 유행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발생동향조사 체제를 정비한다.

(3) 감염 확대 방지책

1) 현행

- ① 의사의 신고 등으로 환자를 파악한 경우, 감염증법에 근거로 하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농후 접촉자에 대한 건강관찰, 외출자제 등을 요청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후생노동성과 전문가와 연계하면서, 적극적인 역학조사 등으로 각각의 환자 발생을 바탕으로 클러스터(집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파악함과 동시에, 환자 클러스터(집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된 환자 클러스터(집단)에 관계되는 시설의 휴업과 이벤트 자제 등의 필요한 대응을 요청한다.
- ② 고령자시설 등에서의 시설 내 감염대책을 철저히 한다.
- ③ 공공교통기관, 역, 기타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서의 감염대책을 철저히 한다.

2) 향후

- ① 지역에서 환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 적극적인 역학조사와 농후접촉자에 대한 건강관찰은 축소하고, 널리 외출자제 협력을 요구하는 대응으로 전환한다.
 - 한편, 지역의 상황에 따라 환자 클러스터(집단)에 대한 대응을 계속 강화한다.
- ② 학교 등에서의 감염대책 방침 제시 및 학교 등의 임시휴업 등의 적절한 실시에 관하여 도도부현 등에서 설치자 등에게 요청한다.

(4) 의료정비체제(상담센터/외래입원)

1) 현행

-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우려하는 자로부터 상담을 받는 귀국자·접촉자 상담 센터를 정비하여 24시간 대응을 한다.
- ②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의 상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은 오히려 감염 리스크를 높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로 연락을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하는 경우에는 감염증상의 정확한 파악,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동센터에서 귀국자·접촉자 외래로 유도한다.
- ③ 귀국자·접촉자 외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의심하는 경우, 유사증환자로서 감염증법에 근거로 하는 신고를 하고, 이와 동시에 PCR 검사를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서 감염증법을 근거로 하는 입원조치를 한다.

- ④ 향후 환자 수의 증가 등을 내다보고, 의료기관에서의 병상과 인공호흡기 등의 확보를 추진한다.
- ⑤ 의료관계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법의 정보제공을 하고, 이와 동시에 치료법·치료약 및 백신, 신속진단용 간이검사키트의 개발 등에 노력한다.

2) 향후

- ① 지역에서 환자 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는 외래에서의 대응에 대해서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시간과 동선을 구분하는 등의 감염대책을 강구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의심하는 환자를 수용한다(또한 지역에서 협의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의심하는 환자의 진찰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예를 들어 투석의료기관, 산부인과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이에 더불어 중증자를 다수 수용할 전망인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에서 차례로 귀국자·접촉자 외래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감기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자택에서 안정·요양을 원칙으로 하고, 상태가 변한 경우에 상담센터 또는 주치의에게 상담한 후 진료를 받는다. 고령자나 기초질환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중증화되기 쉽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다 조기·적절하게 진료를 받는 것으로 한다.

감기증상이 없는 고령자나 기초질환을 가진 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투약 등에 대해서는 감염방지의 관점에서 전화를 통한 진료 등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최대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체제를 사전에 구축한다.

- ② 환자의 계속된 증가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특징을 바탕으로 한 병상과 인공호흡기 등의 확보나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분담(예를 들어 집중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의료기관 등) 등, 적절한 입원의료의 제공체제를 정비한다.
- ③ 원내 감염대책을 한층 더 철저히 도모한다.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억제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한다.
- ④ 고령자 시설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 의심되는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 확대 방지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중증화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입원의료로 연계한다.

(5) 미즈기와(연안격리) 대책

국내로의 감염자의 급격한 유입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현행의 입국제한과 도항금지 권고 등은 계속하여 실시한다.

한편, 검역에서의 대응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의 의료기관 자원 확보의 관점에서, 국내의 감염확대방지책과 의료제공체제 등에 따라 운용을 전환해 간다.

(6) 기타

- ① 마스크나 소독액 등의 증산과 원활한 공급을 관련 사업자에게 요청한다.
- ② 마스크 등의 국민이 필요로 하는 물자가 확보되도록, 과잉 재고를 가지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냉정한 대응을 호소한다.
- ③ 국제적인 연계를 밀접하게 하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여러 외국의 대응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수집에 노력한다. 또한 일본에서 얻은 지견을 적극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활용한다.
- ④ 중국에서 일시 귀국한 아동학생 등에게 학교의 수용지원과 괴롭힘 방지 등의 필요한 대응을 실시한다.
- ⑤ 환자나 대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인권에 배려한 대응을 한다.
- ⑥ 공항, 항만, 의료기관 등에서의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경계경비를 실시한다.
- ⑦ 혼란에 편승한 각종 범죄를 억제함과 동시에, 단속을 철저히 한다.

향후의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본 방침에 근거로 하여 순차적으로 후생노동성을 비롯한 각 부처가 연계한 후, 향후 상황의 진전을 내다보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 등에게 소요의 통지를 내리는 등, 각 대책의 상세한 사항을 제시해 나간다.

지역마다 각 대책의 전환 타이밍에 대해서 우선은 후생노동성이 그 견해를 제시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후생노동성과 상담하면서 판단하기로 하고, 지역의 실정에 따른 최적의 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의 의견을 잘 청취하면서 추진하기로 한다.

사태의 진행과 새로운 과학적인 지견에 근거로 하여 방침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에서 전문가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그 때마다 방침을 갱신하고 구체화한다.

V.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긴급대응책¹¹⁾

1. 기본방침

일본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대책을 주저하지 않고 실행한다는 방침 하에서, 여당 등의 제안을 바탕으로 당면 긴급하게 조치해야 하는 대응책을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의 착실한 집행에 더불어, 제1탄으로 예비비 103억 엔을 강구하여 총액 153억 엔의 대응책을 실행한다.¹²⁾ 이에 더불어, 일본 정책금융공고 등의 긴급대부 및 보증 범위로 5,000억 엔을 확보한다.

향후 시대의 상황 변화를 주시하면서 정부가 예비비도 활용하고, 국내감염대책, 미즈기와의(연안격리) 대책, 또한 관광업에 대한 대응책, 긴급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책을 강구해 나간다.

11 이하는 2020년 2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긴급대응책(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関する緊急対応策)”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関する緊急対応策」, 2020.2.13.

https://www.kantei.go.jp/jp/singi/novel_coronavirus/th_siryou/kinkyutaiou_corona.pdf). 이하의 내용은 긴급대응책 제1탄의 내용이다.

12 2020년 3월 19일 기준, 매매기준율 환율은 일본엔화(JPY)의 경우 1,145원이다(서울외국환중개: <http://www.smbs.biz/ExRate/TodayExRate.jsp> 참조).

2. 긴급대응책

일본정부는 신속하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하고, 이와 동시에 2월 1일부터 상륙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근거로 하는 상륙거부 조치를 강구하였다. 또한 2월 13일부터 보다 포괄적이고 기동적인 미즈기외(연안격리) 대책으로서, 감염자가 다수 늘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오는 외국인과, 감염증 발생 우려가 있는 여객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신속하게 상륙거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였다.

그리고 우한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 등 763명의 귀국을 지원하고, 귀국 후의 생활지원, 건강관리를 실시해 온 것 외에도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대하여 검역법에 근거로 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1) 귀국자 등에 대한 지원¹³⁾

1) 귀국자 등의 건강관리,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지원

정부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자 및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무원 및 승객(이하 ‘귀국자’ 등이라고 함)의 생활지원 및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처 연계 하에서 의관, 간호관을 포함한 자위관 등을 비롯하여 많은 정부직원을 파견하고, 또한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이후 DMAT)·재난정신의료지원팀(Disaster Psychiatric Assistance Team, 이후 DPAT)를 비롯한 의료종사자 등의 협력을 얻어 지원물자의 배포, 휴대전화나 휴대용 와이파이·간이무선 등의 통신기기 제공, PCR 검사¹⁴⁾,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계속하여 귀국자 등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니즈에 따라 필요한 활동을 한다.

이에 더불어, 이번 국가의 요청 등에 근거로 하여 정부 전세기로 귀국한 자의 수용에 협력해준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공헌을 바탕으로 한 필요한 대응을 한다. 또한 정부직원이 전력으로 본 업무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정비를 한다.

13 귀국자 등에 대한 지원: 30억 엔
 - 귀국자 등의 수용지원: 23.4억 엔
 - 방위성에 의한 생활 및 건강관리지원: 3.2억 엔

14 ‘유전자증폭기술(PCR)검사: DNA를 그 복제에 관여하는 프라이머 등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증폭시키는 방법. 극히 미량의 DNA라고 해도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체 검출검사에 범용되고 있다.

2) 귀국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한 지원

귀국자 등의 건강불안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이와 동시에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귀국자 등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한다. 귀국자 등에 대하여 실시한 '유전자증폭기술(PCR)' 검사나 건강진단 등의 경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한다.

또한 일본인학교의 임시휴교 등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일시 귀국한 아동학생 등에 대하여 학교로의 수용지원과 괴롭힘 방지에 관하여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등에 통지를 내리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한다. 이에 더불어 귀국한 아동학생의 취학기회 확보를 위한 상담 대응을 하는 교육상담원을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에 새롭게 배치한다.

3)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감염이 확대되는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의 국외대피 등을 지원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요원의 현지파견, 의약품 등의 물자를 국민에게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중국에 유학중인 일본인유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연락체제의 구축 및 장학금 지원 절차의 유연화를 관계기관에 요청한다.

(2) 국내감염대책의 강화¹⁵⁾

1) 병원체 등의 신속한 검사체제의 강화 등

국립감염증연구소에서 판정을 신속하게 하는 다량검체검사시스템을 긴급정비하고, 검사가능 검체수를 대

15) 국내감염대책의 강화: 65억 엔
- 검사체제 및 의료체제의 강화: 30.6억 엔
- 귀국자 및 접촉자 외래, 접촉자 상담센터 설치: 5.1억 엔
- 검사키트, 항바이러스약 및 백신 등의 연구개발: 10.0억 엔
- 국제적 백신연구개발 등 지원사업: 10.7억 엔
- 마스크 생산설비도입 보조: 4.5억 엔

목적으로 증가시킴과 동시에,¹⁶⁾ 지방위생연구소에서의 차세대 시퀀싱¹⁷⁾ 및 실시간 ‘유전자증폭기술(PCR)’ 장치¹⁸⁾의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검사체제를 확충하여 전국에 83개 있는 지방위생연구소 모든 곳에서 실시간 ‘유전자증폭기술(PCR)’ 검사를 실시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대학과 민간검사기관으로의 외부위탁도 활용하고, 이와 함께 검사용 시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소요의 예산을 확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법에 대하여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개발한 신속 바이러스 검출기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발에 긴급하게 노력하고, 이와 동시에 국립감염증 연구소에 전 계층배열결정시스템을 도입하여 향후 유전자 변이 등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검사정밀도의 유지를 도모하는 외에, 환자의 중증도 등의 병태를 평가하는 검사법을 확립 및 실시하기 위한 검체검사시스템 및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약제 효과를 측정하는 시험기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체제정비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국립감염증연구소 등에서의 연구에도 이바지하도록 감염증 발생상황, 동향 및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한다.

감염확대 방지를 위하여 진료소, 기타 의료기관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 내에 근무하는 직원이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등의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에 도도부현 보건소 등에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이와 함께 공항과 철도 관계자 등에게 철저한 감염예방대책(마스크착용, 손씻기 등)과 감염이 확인된 경우 신속한 보고를 요청한다. 또한 대학입학자 선발 등의 실시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수험생이 감염된 경우 등의 유연한 대응에 대하여 각 대학 등의 실정에 맞는 검토를 의뢰한다. 이러한 노력을 비롯하여 국민의 불안과 의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NHK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주의환기를 함과 동시에, 상담체제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2)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등의 치료체제 및 기능 강화

치료체제에 대해서는 현재 수용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에 대하여 1800병상 이상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 등에서의 중증환자 등에 대한 치료법 개발과 역학연구 등을 가속함으로써, 치

16 현재 국립감염증연구소에서는 1회(6시간 정도)에 200 정도의 검체 검사가 가능하지만, 이를 800 정도로 증가시킨다.

17 차세대 시퀀싱: DNA를 구성하는 핵산 배열을 동시병행으로 고속 및 대량으로 파악하는 해석장치.

18 실시간 PCR 장치: PCR 검사에서 DNA 단편의 증폭과 그 검출을 동시에 행하는 장치. 신속성이 뛰어나다.

료체제의 조기 내실화를 도모한다. 또한 감염된 입원환자의 의료비는 공비로 부담한다.

국민의 불안을 경감시키고 환자를 진료체제 등을 갖춘 의료기관에 확실하게 연계하기 위하여 각 도도부현에서 감염의심 사례를 진찰하기 위한 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

3) 검사키트, 항바이러스약, 백신 등의 연구개발 촉진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MED)를 통한 연구비를 중점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통하여, 국립감염증연구소와 도쿄대학교 의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민간기업과도 연계하면서, 인플루엔자 검사와 마찬가지로 간이방법으로 진단이 가능한 진단키트, 항바이러스약, 재조합단백질 백신 등의 개발과, 구조해석기술 등에 의한 기승인약에서 치료약 후보선정에 조속히 착수한다.

이에 더불어 후생노동과학연구비에 의한 지원과 과학연구비조성사업(특별연구촉진비)에 의한 일본과학진흥회로부터의 지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지견 수집을 하고, 이와 함께 민간기업과도 협력하면서 예방·진단·치료법의 개발로 이어지는 기술 확립을 도모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련된 유전자 재조합 실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제보건분야에서는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New Vaccines For A Safer World: CEPI)에 대한 거출을 통하여 국제협력에 의한 민간기업을 포함한 백신 조기개발을 지원한다.

4) 마스크, 의약품 등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체제의 확보

의료관계단체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마스크 등의 안정공급에 협력을 요구한다. 또한 제조업체 및 도매 판매업자 단체에 마스크 증산 등에 대하여 요청함과 동시에, 요청에 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마스크 생산설비 도입보조를 하는 등 충분한 양의 마스크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이에 더불어 약국관계 단체에 마스크 과잉발주 등을 자숙하게 하고, 1인당 판매수량 제한과 전매 목적의 구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게시를 하도록 요청한다.

이에 더불어 국내의약품 및 의료기기업계에 의약품 등의 원료 등의 제조 루트 확보와 공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여 의약품 원료 등의 확보에 노력한다. 또한 의료용 마스크 등의 각종 방호구에 대하여 각 도도부현에 재고가 부족한 감염증 지정의료기관에 비축분을 할당하는 것 등을 요청한다. 향후 상황 등을 파악하여 마스크, 검사시약, 의약품 등의 신속하고 원활한 공급체제의 확보에 노력한다.

(3) 미즈기와(연안격리) 대책의 강화¹⁹⁾

1) 전국의 검역소 등의 검사체제 및 기능 강화

미즈기와(연안격리)에서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과 검역소와 연계를 강화하여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근거로 한 상륙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검역관의 응원 등의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으로 입국 및 귀국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하고 확실한 검역을 실시하고 검사체제를 강화한다. 이에 더불어 요청에 응하여 격리, 정류를 하는 체제를 긴급하게 정비한다. 국내외 항공회사, 공항회사, 공항빌딩 및 여객선사업자 등에게 여객에 대한 안내 및 주지, 통관, 출입국, 검역업무지원국(CIQ)²⁰⁾ 관청과의 연계 등을 요청한다. 또한 중국에서 일본 도착편을 취항하는 항공회사와 여객선사업자 등에게 철저한 기내 및 선내 방송의 실시와 '건강카드' 배포와 여권 확인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다.

항만관리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연락 및 주지를 도모하여 적절한 대응을 요청하고,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검역과 의료 활동 등을 위한 항만시설 및 선내 등의 이용에 관계되는 조정지원을 실시한다.

선박 여객 상황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유를 도모한다. 또한 해상 보안청에서도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순시선정 등에 의한 해상으로부터의 감염 확대 방지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19 미즈기와(연안격리) 대책의 강화: 34억 엔
- 유증자 발생 시 감염확대방지에 필요한 조치: 30.2억 엔
- 검역체제의 강화: 3.4억 엔

20 CIQ: 세관(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소(Quarantine)의 약자.

경찰에서도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미즈기와(연안격리) 대책 강화에 따른 트러블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계 경비를 한다.

발생국인 중국에서는 재외공관 등에서 열화상계측장치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내방자로부터의 2차 감염 확대를 막는다. 또한 감염증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해외체류국민 및 해외도항자에 대하여 적시 적절한 정보제공 및 주의환기를 실시한다.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도쿄 패럴림픽을 안전하고 안심한 환경에서 개최하는 것도 주시하여, 미즈기와(연안격리) 대책과 감시 대책 등 국내에서의 대책을 강화하여 확실하게 실행한다.

2) 건강 팔로업(follow-up) 센터의 체제정비에 따른 검약기능의 내실화

1월 29일에 후생노동성에 건강 팔로업 센터를 설립하여 중국편 탑승자 중 우한시 등의 방문 이력이 있는 자에게 질문표를 배포하고, 증상이 있는 자와의 접촉력 등을 파악한 후, 전화 등으로 건강상태 팔로업을 시작하였다.

이 건강 팔로업 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연계, 정보공유를 비롯하여 향후 정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제를 긴급하게 정비한다.

3) 입국관리의 강화

중국에서의 감염자 수의 확대와 감염증 발생의 우려가 있는 여행선이 향후에도 일본에 내항할 가능성을 바탕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 및 각의양해(2020년 2월 12일)에 따라, 상륙거부의 대상이 되는 지역, 여객선의 포괄지정을 하여 행동적인 미즈기와(연안격리) 대책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기초로 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자가 많은 수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으로의 상륙을 거부해야 하는 긴급성이 높으므로 일본으로의 상륙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 등²¹⁾과 더불어, 저장성에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 및 저장성에서 출발한 중국여권을 소지한 외국

21 국가안전보장회의결정 및 각의양해(2020년 1월 31일).

인에 대해서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륙거부의 대상이 된다.²²⁾

또한 일본의 항구에 입항하는 목적으로 여행하고 있는 여객선으로, 동선 선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것에 승선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륙거부의 대상이 된다.²³⁾

향후도 상황의 추이를 살펴보고 상륙거부 조치가 필요하게 되면 기동적으로 대상이 되는 지역과 여객선명을 보고하여 공표한다.

(4) 영향을 받는 산업 등에 대한 긴급대응²⁴⁾

1) 국민 및 외국인여행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가짜 뉴스 대책

일본정부 관광국(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JNTO)의 트위터나 웨이보 등을 활용하여 방일 외국인 여행자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국민의 불안과 의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 전화상담창구(콜센터)를 설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적절한 정보제공, 발열 등을 호소하는 관광객 등의 의료기관에서 수진(受診) 권장 등을 하는 일본 정부 관광국의 콜센터에 대하여 푸시(push)형 주지를 강화한다. 또한 숙박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정보발신과 의료기관으로의 수진(受診) 권장을 하고, 이와 함께 수진(受診) 권장을 한 경우의 보고를 하도록 요청한다.

그리고 방일여행과 국내여행을 검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그 불안과 의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광청 및 일본정부 관광국(JNTO)과 여행관계단체 등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한다. 또 내각관방과 스포츠청이 공동으로

22 2020년 2월 13일 오전 0시(일본시간)부터 실시(단, 실시 전에 외국을 출발하여 실시 후에 일본에 도착한 자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3 2020년 2월 13일 오전 0시(일본시간)부터 실시.

24 영향을 받는 산업 등에 대한 긴급대응: 6억 엔
- 콜센터 설치: 4.9억 엔
- 고용조정조성금: 1.0억 엔
(참고) 일본정책금융공고 등: 긴급대부 및 보증범위 5,000억 엔

설치하는 상담창구 등을 활용하여 정부와 경기단체,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하고, 2020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2) 관광업 등의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대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제적인 확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일본 정책금융공고 등에 의한 대부와 신용보증협회에 의한 사회안전망 보증으로 자금유통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일본정책금융공고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특별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자금유통 지원의 필요가 있는 경우, 매출액 감소 등의 정도에 관계없이 사회안전망 대부의 대상으로 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신용보증에 대해서는 특히,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 통상과는 별도의 범위에서 차입채무의 80%를 보증하는 사회안전망 보증 5호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통상과는 별도의 범위에서 차입채무의 100%를 보증하는 사회안전망 보증 4호를 실시한다. 그리고 일시적인 업계 상황 악화 등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여관업 등 영업자 등에 대하여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유통을 지원한다. 이러한 자금유통 지원을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일본정책금융공고 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위한 긴급대부 및 보증범위로서 5,000억 엔을 확보한다.

그리고 숙박사업자 등을 염두에 두고 지방운수국 등에도 특별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사업자의 상황과 요청을 청취하여, 활용 가능한 지원책의 소개와 관계부처와 연계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2019년도 보정예산으로 조치된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추진사업 등에서 이번 감염증의 영향을 받아 공급망의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 투자와 판로개척 등에 힘쓰는 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더불어 산업계에 대하여 경영기반이 약한 하청 등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거래상의 배려를 요구하는 요청을 한다.

지방경제산업국,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 원스톱서비스(よろず支援拠点), 일본정책금융공고, 상공자금, 신용보증협회 등을 비롯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각 관계기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경영상담창구를 설치한다. 재무성, 중소기업청 등의 관계부처에서 정부계열 금융기관, 신용보증협회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의 변제 완화를 위한 조건 변경 요청 등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요청한다.

또한 금융청에서 민간금융기관에 대하여 사업자를 방문하는 등 정중한 경영상담, 경영 계속에 필요한 자금 공급, 기존융자 조건 변경 등, 적절한 대응에 노력하는 것을 요청하고 적극적인 사업자 지원을 촉구한다. 향후에도 사태나 지역이 놓인 상황 변화를 살펴보면서 관광업에 대한 대책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3) 고용 대책

일본정부는 부득이하게 사업활동의 축소를 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등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조정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일본 정부는 지급요건을 일본과 중국 간 사람의 왕래 급감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주로, 전년도 중국(인) 관계 매출 등이 모든 매출액 등의 일정 비율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완화하였다.

(5) 국제연계의 강화²⁵⁾

국립감염증연구소에서 분리에 성공한 바이러스를 연구개발용으로 세계 각국 등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아시아각국 등의 요청에 근거로 하여 의료기자재 등을 제공함과 동시에, 중국 주변국을 중심으로 한 보건시스템 정비를 지원하여 아시아각국 등의 검사체제 내실화에 공헌한다. 이에 더불어 각국 및 지역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국제적인 감염동향을 파악한다.

일본과 중국 간에 고위층을 포함하여 의사소통을 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한 연계를 강화한다. 비축물자도 활용하고, 이미 일본정부가 긴급지원물자로서 중국측의 니즈가 강한 마스크, 고글, 방호복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의료기자재 등의 제공을 검토한다. 그리고 현지 니즈를 확인하는 긴급초동조사를 시작한 인정 NPO법인 재팬 플랫폼 등에 의한 국제공헌을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

25 국제연계의 강화: 18억 엔
 - 아시아각국에 대한 검사체제 내실화에 대한 공헌: 16.5억 엔
 - NGO를 통한 지원: 1.0억 엔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긴급대응책 -제2탄-²⁶⁾

일본 정부는 앞선 2월 13일에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긴급대응책을 제1탄(상기의 내용)으로 하고, 3월 10일에 긴급대응책 제2탄을 발표하였다. 이하에서는 긴급대응책 제2탄의 주요 내용은 간략히 소개한다.²⁷⁾

긴급대응책 제1탄(153억 엔)에 더불어, 올해 예산의 착실한 집행과 예산비 2,715억 엔(일반 회계 2,295억 엔, 특별회계 420억 엔)의 활용에 따라, 긴급대응책 제2탄으로서 4,308억 엔의 재정조치를 강구한다. 이에 더불어, 자금조달 대책 등을 만전에 기하기 위하여 일본정책금융공고 등에 총액 1.6조 엔 규모의 금융조치를 강구한다.²⁸⁾

1) 감염 확대 방지책과 의료제공 체제의 정비 (486억 엔)

① 감염 확대 방지책

- 클러스터 대책의 전문가를 지방공공단체에 파견
- 돌봄시설, 장애인시설, 보육소 등에서의 소독액 구입 등의 보조

②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의 종합적인 마스크 대책

- 인터넷 등에서의 고액 전매 목적의 마스크 구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 전매행위를 금지
- 면마스크 2,000만장을 국가에서 일괄 구입하여 돌봄시설 등에 긴급 배포
- 의료기관용 마스크 1,500만장을 국가에서 일괄 구입하여 필요한 의료기관에 우선 배포
-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한 증산 지원

26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関する緊急対応策—第2弾—」, 2020.3.10.
https://www.kantei.go.jp/jp/singi/novel_coronavirus/th_siryou/kinkyutaiou_corona.pdf.

27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関する緊急対応策—第2弾—(ポイント)」, 2020.3.10.
https://www.kantei.go.jp/jp/singi/novel_coronavirus/th_siryou/kinkyutaiou2_gaiyou_corona.pdf.

28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関する緊急対応策第2弾の規模」,
https://www.kantei.go.jp/jp/singi/novel_coronavirus/th_siryou/kinkyutaiou2_kibo_corona.pdf.

- ③ '유전자증폭기술(PCR)' 검사 체제의 강화
 - '유전자증폭기술(PCR)' 민간 등에 검사 설비의 도입을 지원하고, 검사 능력을 더욱 확대(1일 최대 7,000건 정도)
 - '유전자증폭기술(PCR)' 검사를 보험적용 (공비보조를 계속하여 본인부담금 없음)
- ④ 의료제공 체제의 정비와 치료약 등의 개발 가속
 - 긴급시에 5,000 이상의 병상확보와 인공호흡기 등의 설비정비 지원
 -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 등의 활용에 따른 치료약 등의 개발 가속
- ⑤ 증상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
 - 상병수당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취급의 명확화, 철저한 주지
- ⑥ 정보 발신의 충실
 - 정부 홍보 등의 활용에 따른 알기 쉽고 적극적인 홍보(전형적인 임상정보 등)
 - 체류외국인, 외국인여행자에 대한 다언어로 적절하고 신속한 정보제공

2) 학교의 임시휴업에 따라 발생하는 과제에 대한 대응 (2,463억 엔)

- ① 보호자의 휴가 취득 지원 등
 - 정규직 및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새로운 조성금제도의 창설(조성 비율은 10/10, 일액상한 8,330엔)
 - 위탁을 받아 개인으로 일하는 자도 지원(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일액 4,100엔)
- ② 개인용 긴급 소액자금 등의 특례
 - 긴급 소액자금 등의 특례 창설(긴급 소액 10만 엔→20만 엔, 무이자, 상환면제 등)
- ③ 방과 후 아동 클럽 등의 체제 강화 등
 - 오전부터 방과 후 아동 클럽 등을 개소하는 경우 등의 추가경비를 국비(국고부담비율 10/10) 지원
 -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의 이용료 감면분을 국비(국고부담비율 10/10) 지원
 - 기업주도형 베이비시터 이용자 지원 사업의 3월 할인권 수의 상한 인상(월 24매→120매)
- ④ 학교급식 중지 등에 대한 대응
 - 임시휴업기간 중의 학교급식비의 보호자에 대한 반환요청, 국가에 의한 비용부담지원
 - 급식조리업자, 식품납입업자, 낙농가 등에 대한 세세한 각종 지원
- ⑤ 재택근무(텔레워크) 등의 추진

3) 사업활동의 축소와 고용에 대한 대응 (1,192억 엔)

- ① 고용조정조성금의 특례조치 확대
 - 특례조치의 대상을 전체 사업주로 확대하고, 대상의 명확화(일제휴업 등), 1월 소급적용
 - 특별한 지역에서의 조성을 추가(중소 2/3→4/5, 대기업 1/2→2/3) 등
- ② 강력한 자금유통 대책 ※ 긴급대응책 관련 금융조치: 총액 1.6조 엔 규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대부제도'를 창설(5,000억 엔 규모)하고, 금리인하, 중소·소규모사업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무이자·무담보 자금유통 지원
 - 신용보증협회에 의한 사회안전망 4호(100%)·5호(80%), 위기 관련 보증(100%)
 - 일본정책투자은행(Development Bank of Japan: DBJ) 및 상공중금(商工中金)에 의한 위기대응 업무 등을 실시하고, 자금유통과 국내 공급망 재편지원(2,040억 엔)
 - 민간금융기관에서 신규용자의 적극적인 실시, 기존 채무 조건 변경 등을 요청
- ③ 공급망 훼손에 대한 대응
 - 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의 "성공투자 퍼실리티" 등의 활용(최대 5,000억 엔 규모)
 - 일본정책투자은행(DBJ)에 의한 국내 공급망 재편지원
- ④ 관광업에 대한 대응
 -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조성, 다언어 표시 등, 관광지 유객처의 다각화 등 지원
 - 사태종식 후의 관민일체가 된 캠페인 등 검토
- ⑤ 생활근로자 자립지원제도의 이용촉진 등에 의한 포괄적 지원 강화

4) 사태의 변화에 즉각적인 긴급조치 등 (168억 엔)

- ① 새로운 법제 정비(2020년 3월 10일 각의결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²⁹⁾을 적용

29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2012.5.10. 법률 제31호).
동법의 목적은 "국민의 대부분이 현재 그 면역을 획득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등이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만연하고, 또한 여기에 걸린 경우의 병상 정도가 위독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한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의 실시에 관한 계획, 신종 인플루엔자 등의 발생 시의 조치, 신종 인플루엔자 등 긴급사태조치, 기타 신종 인플루엔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기타 신종 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의 예방 및 만연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신종 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대책 강화를 도모하고, 이로써 신종 인플루엔자 등의 발생 시에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 또한 국민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표-4〉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의 주요 개정 내용

-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법률 제4호)(내각관방)(2020년 3월 13일)²⁹⁾
 - 신종 인플루엔자 등의 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등으로 간주하는 개정을 하기로 함(부칙 제1조의 2 관계)
 - 기타
기타 소요의 개정을 하기로 함.
 - 이 법률은 공포일의 다음날부터 시행하기로 함.
-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의 2 제1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날을 정하는 정령(정령 제4호)(내각관방)
 -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의 2 제1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날은, 2021년 1월 31일로 함.
 - 이 정령은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함.

- ② 미즈기와의(연안격리) 대책에서 신속하고 기동적인 대응
 - 상륙거부·사증제한조치, 검역강화, 감염증 위험정보 제공 등의 신속하고 기동적인 대응
- ③ 행정절차, 공공조달 등에 관계되는 임시조치 등
 - 확정신고기한의 연장(2020년 4월 16일까지), 운전면허갱신의 임시조치 등
 - 공공공사 등의 유연대응(공기의 연장 등)과 이월의 탄력적인 대응
- ④ 국제연계의 강화
 - WHO 등에 의한 긴급지원에 대한 공헌
- ⑤ 지방공공단체의 대응에 대한 재정지원

30 官報(号外特第27号), 2020.3.13.,
<https://kanpou.npb.go.jp/20200313/20200313t00027/20200313t000270001f.html>

VI. 평가

세계적으로 확진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 역시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확산되어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하여 감염증법에 근거로 하는 지정감염증 및 면역법에 근거로 하는 면역감염증으로 지정하여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2020년 1월 28일 개정, 2020년 2월 1일 시행). 이에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의 기본방침(2020년 2월 25일)을 발표하여 관련대책을 마련하여 운용 중이다. 또한 긴급대응책 제1탄(2020년 2월 13일)과 제2탄(2020년 3월 10일)을 잇따라 발표하였고, 이러한 긴급대응책에 대한 예산 확보를 통하여 관련 대책의 착실한 집행을 실행하고자 하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종래의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동법의 대상으로 잠정적으로 추가하였다(2020년 3월 13일 개정, 2020년 3월 14일 시행).

따라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일본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대에 인하여 일본 사회 및 경제에 주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일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책은 가변적이며 유동적이며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官報(号外特第27号), 2020.3.13,
<https://kanpou.npb.go.jp/20200313/20200313t00027/20200313t000270001f.html>.
- 厚生労働省,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を指定感染症として定める等の政令等の施行について(施行通知)」, 健発0128第5号, 2020.1.28,
<https://www.mhlw.go.jp/content/10900000/000589747.pdf>.
- 厚生労働省,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現在の状況について」, 2020.3.29,
https://www.mhlw.go.jp/stf/newpage_10555.html.
- 内閣官房,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の設置について」, 2020.1.30. 閣議決定,
https://www.cas.go.jp/jp/influenza/konkyo_corona.pdf.
- 内閣官房,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関連した感染症について関係省庁における対応状況一覧」,
2020.2.20,
http://www.cas.go.jp/jp/influenza/corona_taiou2.pdf.
- 内閣官房,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を踏まえた対応について」,
https://www.cas.go.jp/jp/influenza/corona_taiou1.pdf.
- 内閣官房,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指定感染症等への指定について」,
https://www.cas.go.jp/jp/influenza/corona_taiou3.pdf.
- 新型インフルエンザ及び鳥インフルエンザに関する関係省庁対策会議, 「新型インフルエンザ対策ガイドライン」, 2009.2.17,
<http://www.cas.go.jp/jp/seisaku/ful/guide/090217keikaku.pdf>.
-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関する緊急対応策」,
2020.2.13,
https://www.kantei.go.jp/jp/singi/novel_coronavirus/th_siryou/kinkyutaiou_corona.pdf.
-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決定,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の基本方針」,
2020.2.25,
<https://www.mhlw.go.jp/content/10900000/000599698.pdf>.
-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関する緊急対応策—第2弾—」,
2020.3.10,
https://www.kantei.go.jp/jp/singi/novel_coronavirus/th_siryou/kinkyutaiou_corona.pdf.
-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関する緊急対応策—第2弾—(ポイント)」,
2020.3.10,
https://www.kantei.go.jp/jp/singi/novel_coronavirus/th_siryou/kinkyutaiou2_gaiyou_corona.pdf.
-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関する緊急対応策第2弾の規模」,
https://www.kantei.go.jp/jp/singi/novel_coronavirus/th_siryou/kinkyutaiou2_kibo_corona.pdf.
- 서울외국환중개, <http://www.smbs.biz/ExRate/TodayExRate.jsp>.